

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92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으로 2024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정책사업(재무활동), 2,344백만원 증액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	
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체육진흥기금	13,442	15,786	2,344	17.4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10,010	10,010	-	-
시민생활체육 진흥	1,201	1,201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2,221	4,565	2,344	105.5
보전지출	2,221	4,565	2,344	105.5
여유자금 예치	2,221	4,565	2,344	105.5
행정운영경비	10	10	-	-

- 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3,442	15,786
이자수입	2,434	2,434
전입금	7,250	7,250
예치금회수	3,758	6,102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3,442	15,786
비용자성사업비	11,211	11,211
기본경비	10	10
여유자금예치	2,221	4,565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김종욱 (☎ 2133-2679)